#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(김교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74 발의연월일: 2021. 2. 24.

발 의 자:김교흥·진성준·강준현

허종식 • 박영순 • 이성만

홍기원 • 문정복 • 조오섭

문진석・김회재・허 영

소병훈 · 조응천 · 박상혁

박찬대 · 천준호 · 장경태

정일영 · 송영길 · 이학영

진선미 의원(2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도심 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신 사업수단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규정하면서, 토지 등을 수용·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포함하기 위해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제11호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827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

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#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1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,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